

제199회 임시회  
2002. 4. 11.

## 검 토 보 고 서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 첨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4월 4일
- 회부일자 : 2002년 4월 4일

3. 제안이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2002. 3. 7, 법률 제6663호)됨에 따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군 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선거구 조정 : 146개 선거구 ⇒ 150개 선거구(4개 선거구 증)
- 의원정수 조정 : 146명 ⇒ 150명 (4명 증)
  - 청주시 : 1명 증  
(용담·명안·산성동→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  
용암·용정·방서동→분구로 2인 선출, 강서2동→강서1동 선거구에서  
분리)
  - 충주시 : 1명 증 (달천동→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구)

- 제천시 : 1명 증 (중앙동→중앙동·화산동선거구에서 분구)
- 옥천군 : 1명 증 (옥천읍→분구로 2인 선출)

○ 선거구 명칭변경 : 2개소

- 청원군 : 북일면선거구 → 내수읍선거구
- 진천군 : 만승면선거구 → 광혜원면선거구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의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 3. 7일 법률 제6663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인 2표제의 도입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선거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되고,

동법 제23조 제1항의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종전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에 따라,

2002년 3. 31현재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거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146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2000년 읍 승격 및 명칭 변경된 내수읍과 광혜원면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증원되는 세부내역을 보면,

청주시 용답·명암·산성동 선거구를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하고, 용암·용정·방서동 선거구의 분구 및 강서2동 선거구가 강서1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 증원되고,

충주시 달천동 선거구가 달천·호암·직동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 증원,

제천시 중앙동 선거구가 중앙·화산동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증원,

옥천군 옥천읍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1명 증원되어, 총 4명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수에 의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의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